

**제4조**(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 타워크레인의 대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3조 및 법 제 21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**◇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

타워크레인을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라 등록하고 정기검사 등을 받는 건설기계에 포함시킴으로써 타워크레인에 관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타워크레인의 안전도를 높이는 한편, 타워크레인에 대한 형식신고의 접수 및 확인검사업무 등을 「한국산업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것임. 〈법제처 제공〉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**대 통 령      노 무 현 인**

2007년11월 5 일

국무총리      한    덕    수

국무위원  
교육인적      김    신    일  
자원부장관

**◎대통령령 제20362호**

**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**

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7조의2**(개방이사의 추천·선임 등)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방이사를 학교법인이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(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) 안에 이사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

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.

④ 2 이상의 학교를 설치·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학평의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.

⑥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“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·경영 학교법인”이란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, 신도의 교육, 선교 활동,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·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.

⑦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설치·경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고시한다.

⑧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개방이사의 추천, 선임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9조의5부터 제9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9조의5(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)**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조정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,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9조의6(조정위원회의 회의)**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소집한다.

③ 조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 및 학교의 임직원,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④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,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9조의7(사무기구)** ①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.

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9조의8(운영규정)**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10조의7** 및 제1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법령의 폐지)**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.

**◇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이유**

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「사립학교법」이 개정(법률 제8545호, 2007. 7.27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,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**◇주요내용**

가.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(영 제7조의 2)

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, 신도의 교육, 선교 활동,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·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하고,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설치·경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해당 학교법인을 따로 고시하도록 함.

나.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(영 제9조의5부터 제9조의8까지 신설)

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조정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,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. <법제처 제공>



**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**

**대 통 령            노 무 현 인**

**2007년11월 5 일**

**국 무 총 리            한 덕 수**

**국 무 위 원            김 장 수**  
**국방부장관**

**◎대통령령 제20363호**

**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**

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3조** 중 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5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**제5조** 중 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무자가 제출(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는”을 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제출[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보통신망(이하 “정보통신망”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]한”으로 한다.

**제6조제2항**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통보(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를 “통보(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한다.

**제7조**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4조제3항에 따라”로, “병역사항신고서 및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를 첨부”를 “병역사항신고서를 첨부(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병역사항신고서 및 병적증명서의 사본 각 1부”를 “병역사항신고서 사본 1부”로 한다.

**제8조제1항제2호** 중 “호적변동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하거나”를 “가족관계 변동으로 신고의무가”로 한다.